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679
----------	-------

발의연월일 : 2026. 4. 28.

발 의 자 : 김미애 · 김기현 · 김성원
김승수 · 박상용 · 박충권
김상훈 · 성일종 · 김정재
김선교 · 김재섭 · 강명구
박성민 · 서지영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8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별로 6%부터 45%까지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구간별 기준금액이 고정되어 있어 실질소득은 정체되어 있는데도 세금만 누진적으로 상승하여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구간별 기준금액이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반영한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구간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2027년	2028년 이후	
1구간	1,400만원 × (1+해당 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이하	[전년도 1구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액 × (1+해당 연도의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2구간	[1구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액] 초과 [5,000만원 × (1+해당 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이하	[1구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액] 초과 [전년도 2구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액 × (1+해당 연도의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 이하	(1구간 최대 종합소득 산출세액) + (1구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3구간	[2구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액] 초과 [8,800만원 × (1+해당 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이하	[2구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액] 초과 [전년도 3구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액 × (1+해당 연도의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 이하	(2구간 최대 종합소득 산출세액) + (2구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4구간	[3구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액] 초과 [1억5천만원 × (1+해당 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 이하	[3구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액] 초과 [전년도 4구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액 × (1+해당 연도의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 이하	(3구간 최대 종합소득 산출세액) + (3구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5구간	[4구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액] 초과 [3억원 × (1+해당 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이하	[4구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액] 초과 [전년도 5구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액 × (1+해당 연도의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 이하	(4구간 최대 종합소득 산출세액) + (4구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6구간	[5구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액] 초과 [5억원 × (1+해당 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이하	[5구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액] 초과 [전년도 6구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액 × (1+해당 연도의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 이하	(5구간 최대 종합소득 산출세액) + (5구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7구간	[6구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액] 초과 [10억원 × (1+해당 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이하	[6구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액] 초과 [전년도 7구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액 × (1+해당 연도의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 이하	(6구간 최대 종합소득 산출세액) + (6구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8구간	7구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액 초과	7구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액 초과	(7구간 최대 종합소득 산출세액) + (7구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
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5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p>	<p>제55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반영한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20%;">종합소득과세표준</th> <th style="width: 80%;">세 율</th> </tr> </thead> <tbody> <tr> <td>1,400만원 이하</td> <td>과세표준의 6퍼센트</td> </tr> <tr> <td>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td> <td>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td> </tr> <tr> <td>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td> <td>624만원 + (5,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td> </tr> <tr> <td>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td> <td>1,536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td> </tr> <tr> <td>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td> <td>3,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td> </tr> <tr> <td>3억원 초과 5억원 이하</td> <td>9,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td> </tr> <tr> <td>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td> <td>1억7,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td> </tr> <tr> <td>10억원 초과</td> <td>3억8,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td> </tr> </tbody> </table>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624만원 + (5,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36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억7,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10억원 초과	3억8,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 style="width: 10%;">구간</th> <th colspan="2" style="width: 70%;">종합소득과세표준</th> <th rowspan="2" style="width: 20%;">세 율</th> </tr> <tr> <th style="width: 30%;">2027년</th> <th style="width: 40%;">2028년 이후</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left;">1구간</td> <td>1,400만원 × (1+해당 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이하</td> <td>[전년도 1구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액 × (1+해당 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이하</td> <td style="text-align: left;">과세표준의 6퍼센트</td> </tr> <tr> <td style="text-align: left;">2구간</td> <td>[1구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액] 초과 [5,000만원 × (1+해당 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이하</td> <td>[1구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액] 초과 [전년도 2구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액 × (1+해당 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이하</td> <td style="text-align: left;">(1구간 최대 종합소득산출세액) + (1구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td> </tr> </tbody> </table>	구간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2027년	2028년 이후	1구간	1,400만원 × (1+해당 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이하	[전년도 1구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액 × (1+해당 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2구간	[1구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액] 초과 [5,000만원 × (1+해당 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이하	[1구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액] 초과 [전년도 2구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액 × (1+해당 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이하	(1구간 최대 종합소득산출세액) + (1구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624만원 + (5,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36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억7,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10억원 초과	3억8,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구간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2027년	2028년 이후																															
1구간	1,400만원 × (1+해당 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이하	[전년도 1구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액 × (1+해당 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2구간	[1구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액] 초과 [5,000만원 × (1+해당 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이하	[1구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액] 초과 [전년도 2구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액 × (1+해당 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이하	(1구간 최대 종합소득산출세액) + (1구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3구간	[2구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액] 초과 [8,800만원 × (1+해당 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이하	[2구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액] 초과 [전년도 3구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액 × (1+해당 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이하	(2구간 최대 종합소득산출세액) + (2구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4구간	[3구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액] 초과 [1억5천만원 × (1+해당 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이하	[3구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액] 초과 [전년도 4구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액 × (1+해당 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이하	(3구간 최대 종합소득산출세액) + (3구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5구간	[4구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액] 초과 [3억원 × (1+해당 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이하	[4구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액] 초과 [전년도 5구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액 × (1+해당 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이하	(4구간 최대 종합소득산출세액) + (4구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6구간	[5구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액] 초과 [5억원 × (1+해당 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이하	[5구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액] 초과 [전년도 6구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액 × (1+해당 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이하	(5구간 최대 종합소득산출세액) + (5구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7구간	[6구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액] 초과 [10억원 × (1+해당 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이하	[6구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액] 초과 [전년도 7구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액 × (1+해당 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이하	(6구간 최대 종합소득산출세액) + (6구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p>② (생략)</p>	<table border="1"> <tr> <td data-bbox="826 248 893 517">8구 간</td> <td data-bbox="896 248 1029 517">7구간 종합 소득 과세 표준 최대 금액 초과</td> <td data-bbox="1032 248 1225 517">7구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 액 초과</td> <td data-bbox="1228 248 1385 517">(7구간 최대 종합소득산출 세액) + (7구 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 대금액을 초 과하는 금액 의 45퍼센트)</td> </tr> </table> <p>② (현행과 같음)</p>	8구 간	7구간 종합 소득 과세 표준 최대 금액 초과	7구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 액 초과	(7구간 최대 종합소득산출 세액) + (7구 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 대금액을 초 과하는 금액 의 45퍼센트)
8구 간	7구간 종합 소득 과세 표준 최대 금액 초과	7구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 액 초과	(7구간 최대 종합소득산출 세액) + (7구 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 대금액을 초 과하는 금액 의 45퍼센트)		